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새만금개발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녹색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7일까지에서 2027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새만금개발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2025년 6월 7일”을 “2027년 6월 7일”로 한다.

별표 2 중 “2025년 6월 7일”을 “2027년 6월 7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녹색에너지기반과) ① 새 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「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<u>2025년 6월 7일까지</u>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 기반과를 둔다.	제12조(녹색에너지기반과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6월 7일</u>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3